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 형 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 형 재 의원입니다.

이승미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지난 5월 30일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폐교활용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시·도 교육감이 폐교재산을 교육 용시설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대부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율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